## ▶ 개요

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**변경이 있는 때**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## ▶ 이용방법

M ACCE			
신청방법	우편, 방문		
접수·처리	즉시	정보통신공사협회 <b>접수</b>	정보통신공사협회 처리(즉시)
수수료	5,000원		
구비서류	▶ 신청인(대표자)제출서류   1.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(1부)  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3 상호 또는 명청의 변경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사본(법인인경우에는 법인동기부등본을 말한다)이하같다)   4. 영업소소재의 변경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서류   5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: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. 사업자등록증사본   나.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(외국인인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)   6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: 제5조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 7.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: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 ▶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 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)   1. 상호 또는 명청의 변경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동기부동본을 말한다.이하같다)   2 영업소소재의 변경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 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: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. 사업자등록증사본   나.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 (외국인의 경우)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)  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: 제5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: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		
관련 법·제도	정보통신공사업법 (제23조제 1항)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(제23조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(제5조 제2항 [별지20])		